오산시의회 공고 제2025-60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관람석 설치·운영기준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에 확대하여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령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 장애인등의 이동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안 제5조)

○ 시장의 시설 개선비용 보조 근거 마련(안 제8조)

○ 민간시설의 최적관람석 설치 권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4

· 전자메일 : jw3788@korea.kr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산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오산시가 관리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